

2025년 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인천도시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 「**i+집dream**」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전세임대주택으로서 **신혼·신생아Ⅱ 유형,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으로 공급됩니다. 입주자는 **최장 6년간 천원주택 월임대료(월 3만원)를 납부**하며 거주하고 일반 월임대료 차액분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합니다.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의 경우 입주자 선정순위 1~2순위까지 신청접수
- 본인 세대의 **소득·자산 및 임대조건** 등을 고려하여 두가지 유형(**신혼·신생아Ⅱ 유형 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유형을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2025년 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2025년 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소멸**됩니다.(본 모집공고 전세임대주택 공급 불가)
- 반드시 본 공고문의 세부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5.04.30(수)**이며, 이는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으로 무효처리(예비신혼부부 동일)**]
- (모집호수) 금회 **공급호수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유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300호**입니다.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명,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300명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2025년 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중복당첨자 수 만큼을 추가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신청은 **인천광역시청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우편접수 불가)

1. 모집일정

모집공고	신청접수	자격조회	결과발표(예정)	주택물색, 권리분석	계약체결
04.30.(수)	05.12.(월) ~ 05.16.(금)	접수 후 약 10주 소요	07.31.(목) 이후		
공사 홈페이지	인천광역시청 방문 ※ 주차불가(공사중) 반드시 대중교통 이용 ※ 우편접수 불가		공사 홈페이지	입주대상자 / 대행법무법인	공인중개사 / 계약대행용역사

※ 상기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2025.05.12.(월) ~ 2025.05.16.(금) 10:00~17:00 인천광역시청 방문접수로만 가능하며, 점심시간(12:00~13:00)과 공휴일에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접수시작일과 오전시간은 방문자가 많아 대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전지역

3. 공급호수 : 500호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300호)

※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명,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300명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2025년 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중복 당첨자 수 만큼을 추가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소멸됩니다.(본 모집공고 전세주택 공급 불가)

※ 선정된 예비입주자 500명(신혼·신생아Ⅱ 유형 200명,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300명)은 주택을 물색하여 계약기한(2025년 12월 31일)까지 인천도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기한 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전세임대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예비입주자 지위는 소멸됩니다.

※ 추가예비입주자는 2025년 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중복 당첨자가 매입임대주택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수량에 해당하는 추가예비입주자 순번에 대하여 입주지원 안내를 통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을 물색하여 계약기한(2025년 12월 31일)까지 인천도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추가예비입주자가 입주지원 안내를 통지받고 계약기한 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전세임대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추가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또한 추가예비입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지원 안내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4. 지원가능 주택 : 인천광역시 관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p>신혼·신생아Ⅱ 유형</p>	<p>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계약 및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p> <p>※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p> <p>※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p>
<p>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p>	<p>신혼·신생아Ⅱ 유형 지원가능 주택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 (단,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원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div>

1. 임대조건

구분	신혼·신생아Ⅱ 유형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지원한도액	24,000만원/호 (입주자부담 임대보증금 포함)	20,000만원/호 (입주자부담 임대보증금 포함)																								
입주자부담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한도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지원한도액</td> <td colspan="2">24,000만원</td> </tr> <tr> <td>입주자부담 임대보증금</td> <td>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td> <td>4,800만원</td> </tr> <tr> <td>전세지원금 (국민주택기금)</td> <td>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80%</td> <td>19,2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인천도시공사에 귀속되는 조건 으로 지원가능하며, 전세보증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함 (단,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 250% 초과 가능)</p>	구분	한도금액		지원한도액	24,000만원		입주자부담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4,800만원	전세지원금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80%	19,200만원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한도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지원한도액</td> <td colspan="2">20,000만원</td> </tr> <tr> <td>입주자부담 임대보증금</td> <td>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td> <td>4,000만원</td> </tr> <tr> <td>전세지원금 (국민주택기금)</td> <td>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80%</td> <td>16,0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인천도시공사에 귀속되는 조건 으로 지원가능하며, 전세보증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함</p>	구분	한도금액		지원한도액	20,000만원		입주자부담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4,000만원	전세지원금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80%	16,000만원
	구분	한도금액																								
지원한도액	24,000만원																									
입주자부담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4,800만원																								
전세지원금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80%	19,200만원																								
구분	한도금액																									
지원한도액	20,000만원																									
입주자부담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4,000만원																								
전세지원금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80%	16,000만원																								
일반 월임대료	전세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전세지원금)에 대한 연 1~2% 이자 - 전세지원금 규모별 금리 <table border="1"> <thead> <tr> <th>전세지원금 규모</th> <th>금리(연이율)</th> </tr> </thead> <tbody> <tr> <td>4천만원 이하</td> <td>1.0%</td> </tr> <tr> <td>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td> <td>1.5%</td> </tr> <tr> <td>6천만원 초과</td> <td>2.0%</td> </tr> </tbody> </table> <p>- 우대금리 적용(단, 최저금리 1.0%)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 월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용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p>	전세지원금 규모	금리(연이율)	4천만원 이하	1.0%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2.0%	전세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전세지원금)에 대한 연 1~2% 이자 - 전세지원금 규모별 금리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원보증금 규모</th> <th>금리(연이율)</th> </tr> </thead> <tbody> <tr> <td>4천만원 이하</td> <td>1.0%</td> </tr> <tr> <td>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td> <td>1.5%</td> </tr> <tr> <td>6천만원 초과</td> <td>2.0%</td> </tr> </tbody> </table> <p>- 우대금리 적용(단, 최저금리 1.0%)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 월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용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p>	지원보증금 규모	금리(연이율)	4천만원 이하	1.0%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2.0%								
	전세지원금 규모	금리(연이율)																								
4천만원 이하	1.0%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2.0%																									
지원보증금 규모	금리(연이율)																									
4천만원 이하	1.0%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2.0%																									
천원주택 월임대료	월임대료 3만원 (임대보증금 별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월임대료 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입주자부담 월임대료</td> <td>월임대료 3만원 (임대보증금 별도)</td> </tr> <tr> <td>월임대료지원 (인천광역시)</td> <td>입주자 부담 월임대료(3만원) 외 일반 월임대료 차액부분</td> </tr> </tbody> </table>	구분	월임대료 금액	입주자부담 월임대료	월임대료 3만원 (임대보증금 별도)	월임대료지원 (인천광역시)	입주자 부담 월임대료(3만원) 외 일반 월임대료 차액부분	월임대료 3만원 (임대보증금 별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월임대료 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입주자부담 월임대료</td> <td>월임대료 3만원 (임대보증금 별도)</td> </tr> <tr> <td>월임대료지원 (인천광역시)</td> <td>입주자 부담 월임대료(3만원) 외 일반 월임대료 차액부분</td> </tr> </tbody> </table>	구분	월임대료 금액	입주자부담 월임대료	월임대료 3만원 (임대보증금 별도)	월임대료지원 (인천광역시)	입주자 부담 월임대료(3만원) 외 일반 월임대료 차액부분												
	구분	월임대료 금액																								
입주자부담 월임대료	월임대료 3만원 (임대보증금 별도)																									
월임대료지원 (인천광역시)	입주자 부담 월임대료(3만원) 외 일반 월임대료 차액부분																									
구분	월임대료 금액																									
입주자부담 월임대료	월임대료 3만원 (임대보증금 별도)																									
월임대료지원 (인천광역시)	입주자 부담 월임대료(3만원) 외 일반 월임대료 차액부분																									

2. 임대기간

구 분	신혼·신생아Ⅱ 유형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임대기간	<p>임대기간 : 2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단,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가능) <p>※ 신생아가구 지원에 관한 특례(25.04.11.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함)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음(이 경우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함) 	<p>임대기간 : 2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가능 																				
천원주택 월임대료 적용기간	<p>적용기간 : 최장 6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 천원주택 월임대료 적용계약 종료 후, 일반 월임대료(전세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전세지원금)에 대한 연 1~2%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유형별 재계약 횟수 한도 내 재계약 가능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미성년 자녀 유무</th> <th colspan="2">계약 횟수 한도</th> </tr> <tr> <th>천원주택 월임대료 적용계약</th> <th>일반 월임대료 적용계약</th> </tr> </thead> <tbody> <tr> <td>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td> <td>3회(6년)</td> <td>2회(4년)</td> </tr> <tr> <td>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td> <td>3회(6년)</td> <td>4회(8년)</td> </tr> <tr> <td>2024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td> <td>3회(6년)</td> <td>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재계약</td> </tr> </tbody> </table>	미성년 자녀 유무	계약 횟수 한도		천원주택 월임대료 적용계약	일반 월임대료 적용계약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3회(6년)	2회(4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회(6년)	4회(8년)	2024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3회(6년)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재계약	<p>적용기간 : 최장 6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 천원주택 월임대료 적용계약 종료 후, 일반 월임대료(전세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전세지원금)에 대한 연 1~2%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유형별 재계약 횟수 한도 내 재계약 가능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계약 횟수 한도</th> </tr> <tr> <th>천원주택 월임대료 적용계약</th> <th>일반 월임대료 적용계약</th> </tr> </thead> <tbody> <tr> <td>3회(6년)</td> <td>1회(2년)</td> </tr> </tbody> </table>	계약 횟수 한도		천원주택 월임대료 적용계약	일반 월임대료 적용계약	3회(6년)	1회(2년)
미성년 자녀 유무	계약 횟수 한도																					
	천원주택 월임대료 적용계약	일반 월임대료 적용계약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3회(6년)	2회(4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회(6년)	4회(8년)																				
2024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3회(6년)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재계약																				
계약 횟수 한도																						
천원주택 월임대료 적용계약	일반 월임대료 적용계약																					
3회(6년)	1회(2년)																					

※ 재계약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조건이 변경(임대료 등 할증)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Ⅱ 유형,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으로 공급됩니다. 입주자는 **최장 6년간 천원주택 월임대료(월 3만원)**를 납부하며 거주하고 일반 월임대료 차액분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합니다.
- 천원주택 월임대료 적용계약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을 통해 **최장 6년간 거주** 가능하며, 이후에는 일반 월임대료(전세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전세지원금)에 대한 연 1~2%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유형별 재계약 횟수 한도 내에서 재계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유형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

- ※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자격검증대상이 됩니다.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에도 불구하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을 산정합니다.
- ※ 「민법」 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있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
- * 단, 임대차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기준일 이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며, 미성년자 자녀 가점 인정 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신청 후 외국인 세대구성원의 출국 등으로 외국인등록번호가 효력중지 또는 말소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자산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1.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2025.04.30.)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Ⅱ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①~⑥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23.05.01.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 ②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8.05.01. ~ '25.04.30.)인 사람
 - ③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⑤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18.05.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⑥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8.05.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2.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유형	소득기준	자산기준
신혼·신생아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이하)	· 총자산 35,400만원 이하 ※ 임대임대주택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30%	7,667,804원	9,915,065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200%	11,501,706원	15,253,946원	17,156,176원	18,062,096원	19,466,172원	20,870,248원

*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예비신혼부부 제외)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

구분	출산자녀수(태아 포함)에 따른 자산기준 금액		
	없음 (105%)	1인 (+10%p)	2인 이상 (+20%p)
총자산가액	354,000,000원 이하	388,000,000원 이하	422,000,000원 이하

(*) 출산자녀수는 '23.0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20%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3.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1, 2순위가 아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격이 취소됩니다.

※ 한부모가족의 경우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순위를 잘못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비입주자 선정(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3점
	나. 차상위계층	2점
② 자녀의 수 *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가. 3인 이상	3점
	나. 2인	2점
	다. 1인	1점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회차 기준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5.04.30. * 발급관리번호 : 2025980057	가. 24회 이상 납입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1점
④ 신청자의 인천광역시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거주지불명으로 인한 등록말소 및 전출이 있을 경우, 이전 거주기간은 산정하지 않고, 재전입, 재등록부터 현재까지 전입기간만을 산정	가. 5년 이상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다. 3년 미만	1점
⑤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기존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2점
⑥ 신청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 존속 부양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해당없음	65세 이상(1960.04.30. 이전 출생) 직계 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	1점

※ 배점 부여 등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만" 나이로 산정함

※ 가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의 가점 해당여부 검토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출서류검토 및 공적기관 조사결과에 따라 사실이 아닌 경우 해당 가점은 인정 불가하며, 신청자 착오 등으로 인한 누락된 가점 추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1.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2025.04.30.)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입주자 선정순위 1~2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 및 자산기준 적용안함)

2.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23.05.01.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 다자녀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가구('06.05.01.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8.05.01. ~ '25.04.30.)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격이 취소됩니다.
- ※ **순위를 잘못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만" 나이로 산정함
-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인정 불가**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무작위 추첨

1. 신청기간 : **2025.05.12.(월) ~ 2025.05.16.(금)** ※ 신청기간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접수시간 : 10:00~17:00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 접수시작일과 오전시간은 방문자가 많아 대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 제출서류 [대리인] 부분 참조)
3.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지하철 1호선·2호선 인천시청역 4번 출구 231m)
 - ※ 주차장 공사로 인하여 차량주차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25.04.30.(수))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 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1. 작성 및 첨부 제출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공통	입주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장소(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에 비치, 모집공고 시 홈페이지에 첨부 * 연락 가능한 연락처 반드시 기재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제출 불요하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일방만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 세대원 전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필요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분양권, 출자금, 비상장 주식내역 등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자필서명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제출 불요하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일방만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 세대원 전원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필요 • (주의)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기재에 따른 증빙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분증 및 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도장 또는 서명가능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을 작성하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신청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 ※ **신혼·신생아II유형 신청자 중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예비 신혼부부 제외)**

2. 발급 제출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공통	주민등록표 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 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 해당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해당주택 입주 전일까지 제출 신생아 가구 및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신청자 중 다자녀가구는 제출할 필요 없으나, 해당 자격으로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제출 필요 한부모 가족은 제출할 필요 없음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신생아 가구	출산, 입양, 임신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 출생증명서(출생 신고 이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가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입양) 입양관계증명서 (임신 중)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헌인서) 	등록기준지 관할법원, 행정복지센터, 병원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가정일 경우 신청자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자녀 입양	입양관계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를 입양한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제출 (입양신고일 확인용) 	행정복지센터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 거소신고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
대리인	위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그 외의 자 신청 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 증명서(본인발급용), 본인 인감도장 	행정복지센터

○ 신혼-신생아Ⅱ 유형 가점확인 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청약 가입자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제출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발급가능 (청약자격확인→청약통장순위확인서발급→[기타임대주택용]맞춤형임대주택 순위확인서)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5.04.30. ※ 발급 관리번호 : 2025980057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종합청약저축으로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해당 배점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은행, 청약홈

제출대상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행정복지센터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 명의로 발급된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인정 	행정복지센터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등 * 신청자 본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등 자녀 명의로 발급이 되는 서류는 자녀 명의 서류제출 가능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장애인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의 장애인 등록증도 신청자 서류로 인정 	행정복지센터

7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항목	유의사항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인이 유형·순위별 중복신청하거나 동일세대 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세대구성원이 중복된 경우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유형 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유형을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인천도시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에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전세임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연락처 오기재로 선정 통보가 도달되지 않는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 및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 소득, 자산 및 세대구성 등)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자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당첨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항목	유의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당첨 및 계약</p>	<p>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사유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기한은 2025.12.31.까지로 해당 기간 내에 주택을 물색하여 인천도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한 연장은 불가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계약기한 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전세 임대지원을 받을 수 없고, 입주대상자의 지위도 소멸하오니 유념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을 물색하여야 하며, 인천도시공사의 승인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한 건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발생시 (가)계약금 등 보호가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또는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대표신청자와 예비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거나 공급신청 시 제출한 '세대구성 확인서'와 실제 입주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격이 취소됩니다. •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아래 증빙서류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 임신중절수술 등을 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 입주자격이 취소됩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출산) 출생증명서(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 자녀가 등재 되어있는 신청자(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p> <p>(입양)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p> <p>(임신 중) 임신진단서(임신헌인서)</p> </div> •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임대보증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인천광역시 내 주택만 지원 가능하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재계약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조건이 변경(임대료 등 할증)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단, 천원주택 월임대료 적용 임대기간(최장 6년) 내 월임대료는 3만원으로 유지됩니다. (연체료 및 할증료는 추가 부과)
<p style="text-align: center;">입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임대주택 계약 시 기존에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대출 기금,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하며 미상환 시 입주 불가합니다. • 입주대상자 중 인천도시공사의 전세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양도·전대 등의 사유로 인천도시공사로부터 계약해제 및 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항목	유의사항
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대상자는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으며, 재계약시점에 반드시 입주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전세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법정 중개수수료는 인천도시공사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 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하게 도배·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 중 10년에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합니다. • 공사에서는 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므로 입주자는 계약 전에 주택을 잘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야 하며, 수리와 관련한 사항은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사기 방지 등을 위해 임대인이 서울보증보험 등의 전세금상품 보험사고자인 경우 계약이 제한되오니 참고하시어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 처리지침」을 준용합니다. • 국토교통부 지침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대조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거나 숙박공유 사이트에 등록하여 단기 임대하는 등의 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전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동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제49조의8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4년의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제57조의3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8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문의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 / 주거복지사업3팀
방문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기간 : 2025.05.12.(월) ~ 2025.05.16.(금) 10:00~17:00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시작일과 오전시간은 방문자가 많아 대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지하철 1호선·2호선 인천시청역 4번 출구 231m) ※ 주차장 공사로 인하여 차량주차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2025. 04. 30.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 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주택의 범위

- ①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②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판단 기준일

- ①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②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의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을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인천도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인천도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요약

구분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 상세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p>*「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p>
총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산정방법
구분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의 시행(2018.03.14.)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세대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안내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신청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증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총자산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국토부 주택전산망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